

<1주12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>

<1>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

- 근로기준법이 법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그리고 1주 40시간입니다(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).
- 그러나 업무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'1주 12시간'을 상한선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(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).
- 그런데 1주 12시간의 의미는 1). 각 요일의 연장근로시간만을 합산한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, 2). 문리해석 그대로 1주간을 기준으로 삼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말하자면, 1주 12시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양자가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. 후 자는 최근 대법원(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도15393판결)의 판단이며, 전 자는 원심의 판단입니다.

<2> 대법원 판단 요지

◈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도15393 판결

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(제1항),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(제2항)고 규정하고,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,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가)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

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'1주간'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.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'제50조의 근로시간'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,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.

- 나) 구 근로기준법은 '1주간 12시간'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(제53조 제2항, 제51조, 제52조),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.
- 다)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(구 근로기준법 제56조),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,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(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,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.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수 없고,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(제110조 제1호) 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2)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(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), 연장근로에 대해서 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.

<2> 대법원 판례 시사점

(1) 사실관계

- 항공기 객실청소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가 휴일근로 없이 '3일 근무 후 하루 휴무 (하루 8시간)' 형태로 일했으며, 1심은 이를 토대로 A씨와 합의없이 주당 근로시 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
- 그런데, 대법원은 원심의 '연장근로 합산 방식'이 잘못됐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.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이므로,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'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

초과하는 근로시간'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- 대법원은 "근로기준법 53조1항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'1주간'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"고 판시했습니다. 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
- 2014년 4월14일~20일 A씨는 4일간 근무했습니다.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치면 17시간30분(15일 4시간, 16일 3시간30분, 17일 6시간30분, 20일 3시간30분)으로 계산됐습니다. 원심이 판단한 '합산 방식'으로,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합니다.
- 그러나 대법원 계산법은 달랐습니다. 총근로시간(연장근로 휴게시간 미반영) 49 시간30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인 9시간30분을 1주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. 연장근로를 한 이틀간의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면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한 시간 더 줄어들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석하면 연장 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.

법원 '주당 연장근로시간' 계산법

(단위:시간)

항목	1주						
요일	월	화	수	목	금	토	일
실근로시간		12	11.5	14.5			11.5
연장근로시간		4	3.5	6.5			3.5
하급심 연장근로 계산	하루 연장근로시간 합산 17.5시간(연장근로 한도 초과)						
대법원 연장근로 계산	총근로시간 합계(49.5) - 법정근로시간(40) = 9.5시간						

자료: 법원 판결문

※ 출처 : 매일노동뉴스(http://www.labortoday.co.kr)

• 1심과 2심은 연장근로시간이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거나,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를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상황을 주목했습니다. 그리하려 각 요일마다 연장근로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한 값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- 그러나 상급심인 대법원은 요일과 관계없이 문리해석하여 '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'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대법원의 해석론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라는 임금채권의 할증액이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.
- 대법원의 판단은 교대제 근무자같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할 경우 하루 연장근로를 합한 시간이 주 12시간이 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.
-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, 하루 최대 24시간 '집중노동'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(2) 판결의 시사점

- 대법원의 계산법은 '역산' 방식입니다.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(주 40시간) 을 뺐을 때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.
- 대법원 해석대로라면 하루에 최장 21.5시간(24시간에서 8시간마다 휴게시간 2시 간과 연장근로 휴게시간 30분 제외)을 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예컨대 하루 21.5시간씩 1주에 이틀만 일했을 경우 총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법정근로시 간(40시간)을 빼면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에 불과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 게 됩니다.
- 반면 '합산 방식'으로 한다면 하루 연장근로시간만 13.5시간(21.5시간-8시간)에 달합니다. 주당 법정 연장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초과해 위법이 됩니다.
- 대법원 판단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도 배치됩니다. 노동부는 2018년 5월 근로 시간 단축 관련 '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'에서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 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.
- 예를 들어 1주 3일간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하루 7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,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이지만, 총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으로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한다는 것입니다.
-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

는 만큼 노동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어떠한 실무 지침을 마련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.

별첨: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도15393 판결문

^^○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